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8. 9. 17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다. 상 정 일 자 : 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98,10,28) 상정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98,10,31) 상정 부결(대안제안)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등에 일부 상충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 구의 출연금과 함께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의 출연금을 재원으로하여 기금을 조성할수 있었던 것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제5조에 근거한 출연금 성격의 모집금지규정으로 구지회 출연금 조성방법을 삭제함.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수 없음에도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금회 지방재정법제 29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개정
- 기금의 관리에 있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원화하여 운영할수 있던사항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구분없이 구금고에 일원화하여 예치관리하도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기부금,성금,기탁금,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기타출연금,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할 수 없어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의 출연금 재원조성방법을 삭제한 사항이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토록 되어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토록 되어있어 관계법규에 부합되게 개정한 사항이며, 기금의 예치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안정성확보차원에서 구금고에 일원화하여 예치토록 개선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일부상충되는 문제를 금회 조례개정에 반영한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을본회의에 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대안을제안